

『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 결정
변경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2월 25일

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도시 세력권 내 도시발전에 따라 산업단지 및 주택재개발, 재건축,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·건설 폐기물의 원활한 매립을 위하여 최첨단 선진국형 “에어돔공법”의 폐기물 복합 처리장을 확장, 조성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
- 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폐기물처리시설)결정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을 제고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산업발전과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
- 시설의 종류 : 환경기초시설
- 시설의 명칭 : 폐기물 처리시설 (매립장)
- 면 적 : 기정 160,260㎡ 변경 391,588㎡(증 231,328㎡)
- 용도지역변경
 - 당 초 : 농림지역 146,842㎡, 보전관리지역 44,268㎡
 - 변 경 : 계획관리지역 191,110㎡
- 사업시행자 : (주)케이엠그린 대표이사 김강호
- 사업기간 : 2008년 3월 31일 ~ 2026년 12월 31일

라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
-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 결정(변경)안은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92-1번지 일원에 (주)케이엠그린에서 기존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(매립)을 장래 수요에 대비 시설확장을 위하여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앞서 기존의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된 사항으로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 평가 본안의 협의완료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고
- 장래 도시의 발전과 기존 및 확장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운영중인 폐기물매립장의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
- 폐기물 매립장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고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익을 환원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「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 결정 변경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」 의 건 서

□ 사업 개요

1.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
2. 시설의 규모 및 용도에 관한 계획
 - 시설의 종류 : 환경기초시설
 - 시설의 명칭 : 폐기물 처리시설 (매립장)
 - 면 적 : 기정 160,260㎡ 변경 391,588㎡ (증 231,328㎡)
 - 용도지역변경
 - 당 초 : 농림지역 146,842㎡, 보전관리지역 44,268㎡
 - 변 경 : 계획관리지역 191,110㎡
3. 추진배경 : 사업 시행자 제안에 의함
 - 사업시행자 : (주)케이엠그린 대표이사 김강호
 - 사 업 기 간 : 2008년 3월 31일 ~ 2026년 12월 31일

□ 의견 사항

-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당초 보다 2.5배 가량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장래 우리시의 발전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
-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전 반드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기 바람
- 기업의 이익 중 일정부분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